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수신 김명호 귀하

(경유)

제목 소청심사사건 결정통지

1. 귀하가 제출한 소청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05. 4.
4. 불임의 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통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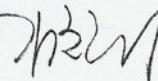
2.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불임 결정서 1부. 끝.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전결

교육행정주사보 김수정 교육행정사무관 김종식 심사과장 

협조자

시행 심사과- 1338(2005. 4. 16.)

접수

우 110-2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1번지 (2층 심사4계) / www.act.go.kr

전화 (02)3704-1630 전송 (02)3704-1603 / scrystal@act.go.kr / 공개

결정서

사건 : 2005-50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

청구인 : 성명 김명호

(전)소속 성균관대학교 (전)직위 조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피청구인이 1996. 3. 1.자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2005. 2. 25. 청구인으로부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있어 우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설치·경영하는 성균관대학교에 1991. 3. 1.부터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1993. 3. 1.부터 1996. 2. 29.까지 임용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3. 1.자 재임용에서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임용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25.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소청심사청구의 요건 구비 여부

1) 구 판례는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부인했으나, 신 판례들과 개정법은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2)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라 함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행위로서의 재임용거부가 있었으나 과거 판례가 일관되게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기간의 계산은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이 공포된 날인 2005. 1. 27. 즉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임이 공식화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계획적인 재임용 탈락 및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1) 청구인은 1995. 1. 실시된 성균관대학교 본고사 수학채점위원으로 입시문제 출제오류를 지적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양심을 품은 출제교수들을 비호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6. 3. 1.자 조교수 재임용탈락을 계획하고, 1995. 4.과 같은 해 10. 두 차례의 부교수 승진 탈락과 정직3월의 징계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연구실적에 대한 부적격 판정으로 1996. 3. 1.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2) 피청구인의 교원인사규정 제5장 제19조에 의하면,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인 3명 교수들의 연구실적심사위원 심사표를 당해 대학원장, 대학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작위적으로 '부적격' 평가를 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복성 연구실적 심사와 징계가 명백히 불법·부당하여 그로 인해 결정된 1996. 3. 1.자 재임용거부는 당연히 무효이다.

3.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인의 청구가 우리 위원회에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소청심사심청구서(2005. 2. 25.), 피청구인의 변명서(2005. 3. 15.), 우리 위원회 소청심사결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3. 13. 동일한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1996. 4. 23. 판단을 받았고(96-27 소청심사사건), 소청심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행정심판법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에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된 취지와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에 판례변경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구제 절차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된 사안이라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행정구제절차상 더 이상 다투 수 없는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4.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이 종 서

위 원 유 명 규

위 원 박 상 선

위 원 박 영 순

위 원 유 일 언

위 원 진 현 숙

위 원 홍 은 희

위 정본임.

2005. 4. 18.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